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3가합546245 판결 [주주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유한공사

피고1. C

2. D

3. 주식회사 E

4. 주식회사 F

변론 종결2015. 4. 22.

판결 선고201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B유한공사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은 2010. 1. 4.경 중국에서 미용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 〉

갑 : 원고 A

을 : 피고 C, D

병 : 피고 주식회사 E

정 : G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 F의 전신)

1. 갑은 막대한 경제력과 풍부한 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로, 을, 병, 정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및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합작하고 공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본 협약 각 당사자는 향후 체결하는 관련 협약서 등 법률문서에 원고 A이 타인 혹은 기타 법인을 협약의 '갑' 측 주체로 지정하여 원고 A 본인이 본 협약에서 가지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A 본인이 본 협약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책임지는데 대하여 동의한다. 본 협약서의 '갑'은 원고 A 및/혹은 원고 A이 지정한 제3자 및/혹은 법인으로 한다.

제1장 중국 내에서의 합작

제1조

중국 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 당사자들은 중국 북경시에 한중 합자기업(이하 본 협약에서 '합자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제2조

합자회사는 갑, 병, 정이 출자하여 설립하며 설립자본금은 5,000,000위안이다. 그 중 갑은 3,000,000위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의 60% 지분을 소유하고, 을은 1,000,000위안을 출자하여 지분 20%, 병은 1,000,000위안을 출자하여 지분 20%를 각 소유한다. 자본금 납입은 자본액 확인 시 일시불로 납입되어야 한다.

제3조

합자회사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을, 병, 정의 경영범위에 관련된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제작, 판매, 대리, 운영관리(H 제품과 I 제품, 화장품과 미용관련제품 등은 포함되지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와 미용산업의 중국 총대리(동시에 북경지역, 홍콩지역, 마카오지역의 총대리도 포함된다)의 기능, 책임과 권한이 포함된다.

제5조

합자회사의 총경리(사장)직은 병 혹은 정이 한국 미용업계의 전문인사를 추천하며 이사회의 확인을 거친 후 직책에 임한다.

제6조

본 협약서 체결 당사자는 병과 정이 향후 합자회사에 제공하는 제품, 설비, 기기 등이 병과 정이 해당 제품, 설비, 기기를 생산하는 실제 원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하며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을 내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확인한다.

제7조

을은 합자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것을 동의하며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장 한국 내에서의 협력

제11조

한국 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갑이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혹은 증자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병과 정의 각 10%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며 갑이 을과 공동으로 병, 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데 동의한다.

제12조

갑은 병과 정의 각 10%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에게 1,000,000,000원(한국화폐)의 지분매입금을 지급한다.

제3장 기타 약정

제18조(위약책임)

① 당사자 중 본 협약서에 정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측에 대하여 모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어느 한 측이 본 협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자가 진술하거나 약속한 부분 포함)
2. 어느 한 측이 본 협약서의 약정에 따라 회사내부 업무, 정부심사신고절차 등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어느 한 측이 본 협약서 중에서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약속한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누락된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증명할 시
4. 본 협약서의 기타 조항을 위반하여 위약책임의 상황이 될 경우

나. 원고 A은 2010. 1. 4.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합작계약 제12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취득대금 1,0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17. 원고 B 유한공사(이하 'B'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 E, F의 계좌로 미화 793,258.4달러(한화 900,000,0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피고 E은 2010. 3. 18.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50,000주로 늘리면서 그 중 1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원고 A이 지정한 법인인 원고 B에게 배정해주었고, 피고 F도 같은 날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30,000주로 늘리면서 그 중 10%에 해당하는 3,000주를 원고 B에게 배정해주었다(이하 원고 B에게 배정된 피고 E, F의 주식 합계 8,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 A과 피고들은 2010.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작계약에 관한 보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충계약의 주요 내용 >

1. 이 사건 합작계약 제3조에 대한 수정은 아래와 같다.

합작회사의 경영범위 : 중국국내(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책임지는 영역은

- 1) 브랜드 미용원 직영점의 설립 및 경영관리
- 2) 가맹점 발전 및 가맹점의 경영관리
- 3) 을, 병, 정 측의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미래 생산, 판매할 제품의 대리판매(H, I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 지금 H, I 두 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에 이 두 브랜드는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새 브랜드의 제품도 대리판매 할 수 있다는 뜻임)

위와 같은 조약이 있지만, 합작회사 권익에 손해가 없을 경우, 을, 병, 정 측은 아래와 같은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상용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 1) 기타 기업의 브랜드 제품에 OEM 가공 생산하여 얻는 가공생산비용
- 2) 기타 기업과 기술합작을 하여 얻는 기술합작비용
- 3) 미용교육, 기업이미지설계, 웨딩 촬영 및 신부화장설계. 다만 같은 조건 하에 합작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 4) 을 측 개인 명의로 진행되는 활동 및 연구합작

라. 원고 A과 피고들은 2010. 8. 27. 중국 북경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의한 합작회사인 J 유한공사(이하 '합작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미용샵 운영, 화장품 판매사업 등을 시작하였고, 피고 D가 합작회사의 총경리를, 원고 A이 지정한 K가 법정대표를 각 맡았다. 원고 A은 합작회사에 3,000,000위안을, 피고 E, F는 합작회사에 각 1,000,000위안을 각 출자하였다.

마. 피고 C, D가 합작회사 설립 후 합작회사의 직영 미용샵 운영 등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성과가 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들 측은 2011. 6. 2. 북경 소재 합작회사의 직영 미용샵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의한 사업관계 정리 문제 등으로 피고 C, D 측과 언쟁을 벌이다 피고 D를 폭행하였고, 피고 D의 신고로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영사 L 등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합작회사는 2011. 6. 10. 북경 소재 직영 미용샵의 직원 임금과 건물임대관계를 정리한 다음 폐업하였고, 피고 C, D는 그 무렵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합작계약 해제

이 사건 합작계약 제3조에 의하면 합작회사가 피고 E, F의 제품과 미용산업에 관하여 중국 내 독점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는 2010. 3.경 원고 A 및 합작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중국 광저우에서 미용샵을 운영함으로써 위 계약조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합작회사의 총경리로 내세운 피고 D는 한국 미용업계의 전문인사가 아니므로 이는 이 사건 합작계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작계약 제6조를 위반하여 피고 E, F의 제품을 합작회사에게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북경 소재 합작회사의 직영 미용실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6. 10. K를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합작계약 취소

피고 C, D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액면금 40,000,000원(= 1주당 5,000원 × 8,000주)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위 주식의 가치가 1,000,000,000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작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설령 피고 C, D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합작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 A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작계약을 취소한다.

다. 이 사건 합작계약의 합의해제

설령 위에서 본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 D는 원고들 측이 2011. 6. 10.경 이 사건 합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직영 미용샵을 폐업하자 피고 C, D도 한국으로 돌아가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작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위 합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주위적으로 위 합작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인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목상의 보유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합작계약 해제 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합작계약 제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합작계약 제3조는 피고들의 경영범위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 판매, 운영관리 등과 미용산업에 관한 중국 내 총대리가 합작회사의 운영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충계약은 이를 구체화하여 합작회사의

경영범위가 브랜드 미용원 직영점의 설립 및 경영관리, 가맹점 발전 및 경영관리, 피고들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대리판매 등을 합작회사의 경영범위에 포함하되, 기타 기업의 브랜드 제품의 OEM 가공, 기타 기업과의 기술합작, 피고 C, D 개인 명의의 활동 등은 합작회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또는 합작회사의 허락 없이 중국 내에서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피고들이 생산·판매하는 H, I 등의 미용제품의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 계약조항에 위반된다. 그러나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2009. 11.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 M에게 피고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미용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M이 2010. 3.경부터 2011. 3.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미용샵을 운영한 사실, M이 미용샵을 오픈하기 전에 원고들 측 합작회사 관계자인 N이 피고 D와 함께 위 미용샵에 방문하여 M에게 위 미용샵의 경영은 M이 알아서 하되 사용할 미용제품을 합작회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M은 합작회사로부터 미용제품을 공급받은 사실, 합작회사가 2010. 8.경 북경에서 직영 미용샵을 오픈하자 M의 광저우 소재 미용샵에서 근무한 직원이 위 직영 미용샵에 가서 근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이 운영한 광저우 소재 미용샵을 피고 F의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광저우 소재 미용샵은 실질적으로 합작회사의 가맹점 또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원고들 및 합작회사가 그 설립·운영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 또는 합작회사 몰래 위 광저우 소재 미용샵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합작계약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합작계약 제5조, 제6조, 제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한국 미용업계의 전문인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작회사의 총경리로 취임하였다거나, 피고 E, F가 합작회사에게 미용제품을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거나, 피고 C, D가 북경 소재 합작회사의

직영 미용실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합작계약 취소 주장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인 40,000,000원에도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마치 위 주식의 가치가 1,000,000,000원에 이른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 A이 피고 E, F의 매출액, 영업상황, 사업전망 등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C, D의 말만 믿거나 스스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주식이 가치가 1,000,000,000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합의해제 주장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가 2011. 6. 10.경 북경 소재 합작회사의 직영 미용샵을 떠나 귀국한 것은 앞서 2011. 6. 2. 원고들 측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합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져 피고 D가 원고들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설상가상으로 합작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 측이 2011. 6. 10. 위 직영 미용실의 건물임대관계를 정리하고 폐업까지 강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가 위 직영 미용샵을 떠나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합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이상률

판사김유신